
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6-41호

주택재개발·재건축사업 구역 내 건축행위 허가기준 고시

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허가(신고) 신청 시 허가(신고)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4월 22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구분	기존	변경	비고
신축	제한	제한	
증축	제한	제한	※ 승강기, 계단, 화장실, 주차장 등 허용
개축	제한	허용	
재축	허용	허용	
대수선	허용	허용	
용도변경	일부 허용	일부 허용	※ 허용 : 용도변경 (주택 ⇒ 주택 외) ※ 제한 : 용도변경 (주택 외 ⇒ 주택) 기재사항 변경(세대수 증가)

※ 사업시행자 의견청취 및 협의 완료 후 허가

※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.

구분	팀명	연락처
주택재개발사업	주택재개발팀	02) 2148-2624
주택재건축사업	주택사업팀	02) 2148-2612

붙임 :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(신고) 신청에 따른 각서 1부. 끝.

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(신고) 신청에 따른 각서

건축주			
주 소			
성 명		생년월일	
토지현황			
위 치	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		
대지면적	m ²	지 목	
건축현황			
건축면적	m ²	건 폐 율	%
연 면 적	m ²	용 적 륜	%
층 수	지상 층/지하 층	구 조	
비 고			

상기 본인은 주택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(신고) 신청에 있어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주택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과 정비사업 관련 토지 및 건축물의 철거 및 보상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제출자 성명 : (인)

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귀하